

의안번호	2212800
의 퇴 인	조은희의원
회 답 일	2025.11.18.
추계번호	25D4881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(잠정조치)	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,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2항(잠정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요양시설 위탁 및 상담위탁(안 제9조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행위자를 추가하고, 잠정조치로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하거나 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는 등의 처분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의료기관등 위탁·상담위탁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인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8조¹⁾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개정안에 따른 요양시설 위탁 또는 상담소 상담위탁의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
1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8조(비용의 부담)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
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추계하기가 곤란함

- 참고로 2022~2024년 3년간 교제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4]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: 2020~2023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가율
교제폭력 형사입건건수	8,951	10,538	12,828	13,939	15.9%

자료: 공공데이터 포털(data.go.kr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